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15
----------	------

제출연월일: 2020. 4. 10.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주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고자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수수료 반환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협의회 및 심의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구성비율 규정(안 제9조, 안 제13조)

나. 수수료 반환 규정 마련(안 제26조제2항)

- 1) 과오납한 경우
-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 3) 행정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2020. 3. 16 ~ 4. 6(21일간)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
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
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
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생략)</p> <p>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주민협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3. ~ 7. (생략)</p> <p>③ (생략)</p>	<p>제9조(주민협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구성하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u>.</p> <p>3. ~ 7.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u>위촉한다</u>.</p> <p>1. ~ 3. (생략)</p> <p>② ~ ⑥ (생략)</p>	<p>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 ----- ----- <u>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26조(수수료) ① (생략)</p>	<p>제26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p>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
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울산중구011		
정책명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부서명	건축과	
	담당자명	이경희	전화번호 052-290-402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3월 1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축과)	<p>본 개정안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p> <p>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수료 반환 규정 마련(안 제26조제2항)에 관한 내용임.</p>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p>'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개정조항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으나,</p> <p>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는 지자체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에 제9조의 주민협의회와 제13조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추후 개정 시 상위법률을 준수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드립니다</p>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1	제9조(주민협의회 운영)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주민협의회 운영)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상위법률 준수요망
2	제13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상위법률 준수요망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0년 3월 20일 까지
<p data-bbox="199 347 1388 385">「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data-bbox="678 436 917 474">2020년 03월 16일</p> <p data-bbox="454 537 1141 593">울산광역시중구성별영향평가책임관</p> <p data-bbox="518 616 1077 654">(담당자/연락번호 : 김양선/052-290-4903)</p> <p data-bbox="231 694 486 739">건축과장 귀하</p>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0A울산중구011			
정책명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부서명	건축과		
	담당자명	이경희	전화번호	052-290-4021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p>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는 지자체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에 제9조의 주민협의회와 제13조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추후 개정 시 상위법률을 준수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드립니다</p>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p>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②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p> <p>제13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p>
---	--	---	--

2020년 03월 18일

건축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수수료의 반환규정을 명시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적·권고적 내용으로 비용추계에 어려운 점이 있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3. 작성자

- 소 속: 건축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이 름: 이경희
- 연락처: (052)290-4021